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석,
서상열, 송경택, 송도호,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원형, 이종환, 최민규,
최유희,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제명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조 중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 중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령</u>」 제3조제2호에 따른 <u>개 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u>을 영위 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 동차를 소유한 사업자</p> <p>3. <u>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령</u>」 제3조제3호에 따른 <u>용 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u>을 영위 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 동차를 소유한 사업자</p> <p>4. (생 략)</p> <p>제3조(면제대상) 개인택시 및 소 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u>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u>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u> :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 <u>제3조제1항제2호</u>에서 정한 <u>운 송사업자</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면제대상) ----- ----- ----- <u>개인화물자동차</u> ----- -----</p>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 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나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

----- 개인화물자동차 -----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